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국립식물검역원 자료 제공

국립식물검역원이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요령(안)을 발표했다. 이는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수입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식물검역원 고시 2006-14호)과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검역요령(식물검역원 고시 2006-8호)을 통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검역관이 활용하기 편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법안은 현행 목재포장재검역요령 중에서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선 검역관 및 업체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했고, 이해하기 쉽도록 산재되어 있거나 중복된 내용을 간결하게 하고 '열처리업체운영정보시스템' 구축에 맞게 서식 등을 정비했다.

본 고에서는 검역요령 법안과 함께 소독처리마크와 마크표지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및 농약관리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재포장재”란 목재패렛트·나무상자·반침목(짐갈개)·목재용기·지지목(버팀목)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된 목재는 제외한다.

2. “가공된 목재”란 접착제, 열, 압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방법을 혼합하여 제조된 합판·파티클보드·배향성스트랜드보드·베니어 등과 같이 병해충이 제거 또는 사멸된 상태로 전부 목재로

구성되어 있는 산물과 식물방역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가공한 나무제품을 말한다.

3. “국제기준”이란 FAO/IPPC 사무국에서 정한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을 말한다.

4. “열처리(Heat Treatment)”란 목재포장재 중심부 온도를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5. “MB훈증”이란 목재포장재를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로 처리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소독”이란 열처리 또는 MB훈증 기타 이와 동등한 소독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7.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이하 ‘열처리업자’라 한다)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하 ‘열처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방제업자’라 한다)란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원장으로부터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방제업’이라 한다)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9. “소독처리업자”란 “열처리업자” 또는 “방제업자”를 말한다.

10. “열처리업체”란 열처리업자가, “방제업체”란 방제업자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11. “소독작업결과서”란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또는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말한다.

12. “소독처리마크”란 국립식물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에 등록(신고)된 소독처리업자가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를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표시하는 [별표2]의 마크를 말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공식 스탬프 또는 소인을 말한다.

13. “수선(Repair)”이란 기존에 사용하였던 목재포장재의 구성요소 일부를 제거하고 새로운 목재포장재 구성요소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14. “재제작(Remanufacture)”이란 기존에 사용하였던 목재포장재를 전체적으로 분리하고 그 구성요소를 다른 목재포장재 제조시 원형 그 상태 또는 재 절단한 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5. “재활용(Recycle)”이란 기존에 사용하였던 목재포장재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분리하고 그 구성요소를 새로운 목재포장재 제작시 새로운 공정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6. “재사용(Resue)”이란 목재포장재의 어떠한 구성요소도 교체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원형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7. “수피제거(Debarking)”란 공정된 박피작업과정을 거쳐 목재에서 수피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제3조(목재포장재 수출) ①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화물에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독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별표1]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칠브로마이드(MB) 훈증으로 소독처리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별표2]의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 외에 별도 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따르거나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 있고 병해충에 재감염되어 있지 아니한 목재포장재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재활용, 재제작 또는 수선된 목재포장재는 다시 소독 후 마크를 재표시하여야 하며, 목재포장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요소가 소독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수출목재포장재 검사신청 및 검역증명서 발급) ①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검사신청서에는 소독처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작업결과서와 별지 3호서식의 원자재소요량확인서(각재 등 반제품에 한한다)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식물방역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검사, 실험실정밀검사 및 소독처리이행결과 확인 등을 생략하고 제2항에 따른 소독작업결과서의 적정여부 확인으로 소독처리사항이 부기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및 실험실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제3장 열처리업의 등록, 시설 등 검사

제5조(열처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검사 및 등록) ①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열처리업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3]의 열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따라 열처리업체의 시설, 장비 등이 규칙 제44조(별표9)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별지 제7호서식의 열처리업등록기준조사표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보고한 조사결과서를 검토하여 규칙 제44조 [별표9]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으로 열처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한다. 다만, 『목재포장재열처

리업체운영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등록증 재발급 및 등록기준 변동통지)

① 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한 등록증 재발급 신청사유가 발생한 열처리업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 소재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규칙 별지 제38호서식으로 재발급신청하여야 한다.

② 열처리업자는 시설, 장비 등의 등록기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열처리업등록기준변동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마크 변동 등록은 제7조에 따른다.

③ 등록증의 재발급에 따른 열처리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조사, 조사결과 보고, 등록증 발급 및 등록대장 기록 등은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조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④ 등록기준에는 변동이 없으나 장비 등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발급을 생략하고 그 조사결과만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소독처리마크 사용등록 등) ① 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라 소독처리마크를 최초 사용하고자 하는 열처리업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소독처리마크 사용등록(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제작하는 경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소독처리마크가 마모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동일한 일련번호와 형태의 소독처리마크를 다시 제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신고)변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신고)신청서” 또는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신고)변동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주의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증(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신고)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증(신고증)을 발급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과 다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마모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독처리마크는 소독처리업자가 식물방역관에게 반납하거나 식물방역관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열처리업체의 관리)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열처리업체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규칙 제44조 [별표9]의 기준에 적합한지와 [별표1]의 소독처리기준을 준수하는지를 년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1. 수입국가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업체
2.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서 병해충이 검출된 업체
3. 허위, 부실소독 등으로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4. 시정 및 보완명령을 받은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규칙 제44조 [별표9]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열처리업체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 및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다음해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열처리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행정처분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소독처리업자의 소독처리기준 및 마크표시 등에 대한 준수사항

제9조(소독처리업자의 마크표시 의무 등) ① 소독처리업자는 규칙 제46조 따라 [별표1] 목재포장재소독처리기준, [별표2] 소독처리마크 및 마크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표4] 목재포장재 열처리 시 주의사항과 농약관리법 관계규정에 따라 소독처리 하여야 한다.

② 소독처리업자 등은 목재포장재 소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소독처리업자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처리 후 지체 없이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목재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각재, 판재 등 반제품의 구매자 또는 소독 의뢰자가 별지 제17호서식의 “목재포장재 제작계획 및 소독처리마크 사후표지요청서”를 열처리업자에게 제출하고 열처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재 제작 및 관리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수출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상태에서 훈증소독을 하고자 방제업자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컨테이너훈증전소독처리마크표지승인요청서”를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컨테이너훈증 전 소독처리마크표지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소독처리업자는 소독 후 다음 서류를 작성하고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원으로부터 고유부호(ID) 등을 부여받아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가. 열처리(훈증)소독작업결과서(목재중심부에 대한 온도자동기록표 포함)
- 나. 목재포장재열처리(MB훈증) 작업일지

다.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관리대장

라. 목재포장재 제작계획 및 소독처리마크 사후표지요청서(사후 표지에 한함)

3. 소독 처리된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소독 처리되지 아니한 목재류와 구분·격리, 피복 관리하여야 하며, 병해충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소독 처리된 목재포장재가 병해충에 재감염되었거나 수입국이 요구하는 소독 처리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선적 전 증명서 발급시점 등)에는 재소독을 하여야 한다.

5. 식물방역관이 소독이행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재종류, 소독일자, 의뢰업체 등이 포함된 소독계획을 소독실시 전까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6. 영업정지 중인 소독처리업자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소독처리마크를 반납하여야 하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7. 불법 또는 허위로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된 목재포장재는 마크표시를 제거 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독처리를 하고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8. 열처리업자는 목재중심부 온도 측정용 센서를 포함한 온도측정장치에 대하여 1년 주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정을 받아야 하며, 교정오차 범위는 ±0.5℃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제10조(열처리업 등록 자진취소 등) ① 열처리업 등록을 자진 취하 또는 취소된 소독처리업자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등록증과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증 및 소독처리마크를 시설 소재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열처리업등록증을 원장에게 송부하고,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증 및 소독처리마크는 폐기한다.

제11조(소독실적 제출) 소독처리업자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실적을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시설 소재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2조(수입 요건) ① 수입 화물(농산물·공산품·이산화물 등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화물을 말한다)의 목재포장재는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하는 시설(업체)에서 [별표1]의 방법으로 소독처리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이를 증명하는 [별표2]의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가공된 목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부합하는 소독처리를 한 목재포장재는 병해충 감염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재소독 및 소독처리마크 표시 없이 다시 사용할 수 있으나 재제작, 재활용 또는 수선된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소독 후 다시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목재포장재에는 살아 있는 병해충이 없어야 하고, 수피는 제거되어야 한다.

제13조(수입 검사 등) 식물방역관은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등에서 수입화물을 임의로 추출하여 부착된 목재포장재의 수입요건 적합 여부, 소독처리마크 표시 여부, 병해충 부착 여부를 [별표5]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처분) ① 식물방역관은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사결과, 병해충 등이 검출된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의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화물목재포장재 명령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1. 식물방역관은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나 금지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당해 화물 및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과 목재포장재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목재포장재만 처분할 수 있다.

2.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23조에 따라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해당 화물 및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비식물체인 화물과 목재포장재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목재포장재만 처분할 수 있다.

가.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없는 경우

나. 수피가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해당 포장재에 한함)

다. 소독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소유자 등이 폐기·반송을 원할 경우

라.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별표6]의 목재포장재 검사결과에 따른 처분방법과 같다.

③ 식물방역관은 소독 또는 폐기·반송 명령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규칙 제26조에 따라 그 명령의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이동승인 등) ① 명령을 받은 목재포장재를 화물과 분리하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화물의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 요청서(이하 "이동승인요청서"라 한다)를 수입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화물의 이동승인을 받아 최종 도착지에서 처분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 다만,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동승인 요청을 할 수 없다.

1. 특수 포장 화물·정밀기계 또는 그 부품, 유리제품, 독극물 등 위험물, 기타 수입지에서 포장재를 분리하면 화물 손상 우려가 큰 경우

2. 묘목류·분재류·벌크 화물 등 포장재 분리 시 재포장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수입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이동승인 요청 사유를 검토한 결과 수입지에서의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입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동승인 요청사유, 이동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병해충 전파 우려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서(이하 '이동승인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고, 1부는 다음 각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도착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목적지 도착 예정일까지 팩스 등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검사신청서(수입식물의 경우)

2. 소독·폐기·반송 명령서

3. 이동승인요청서

4. 이동승인서

③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식물방역관은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서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④ 최종 도착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지에서 이관한 요건 부적합 이동승인서를 별지 제3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목재포장재의 처분이행 결과를 제23조제3항과 같이 확인한다.

⑤ 이동승인요청서 검토 결과 수입지에서 분리처분이 가능하거나 이동방법 부적절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요청자에게 이동승인 불가사유를 통보한다.

⑥ 화물의 수입자,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이동 중에 최종 도착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착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다시 이동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화물의 이동이 여러 지역으로 분할되는 경우 분할지역별로 이동승인을 할 수 있다.

제16조(소독·폐기의 방법) 식물방역관으로부터 소독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화물의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표1]의 방법으로 소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1. 소각

2. 매몰(깊이 1m 이상으로 하며, 흰개미 또는 이와 유사한 해충에 감염된 목재는 처리 할 수 없다)

3. 원장이 정하는 병해충이 사멸될 수 있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가공된 목재에 준한 처리에 한한다)



제17조(소독·폐기 확인)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소독·폐기 등 처분명령 이행 결과는 식물방역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이행결과 서류를 식물방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독의 경우는 열처리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발행한 소독작업결과서
2. 폐기의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34호서식의 폐기확인서
3. 가공처리의 경우는 원장이 정하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를 실시한 자(업체)가 발행한 별지 제35호서식의 처리확인서

제18조(처분명령의 이행기간) 수입화물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반송명령 이행기간은 규칙 제24조 [별표7]과 같다.

제19조(처분내용 증명 및 발급) 식물방역관은 수입화물목재포장재가 소독, 폐기, 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소유자 등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규칙 제27조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분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6호서식의 처분발급대장에 기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신고한 열처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열처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신고된 소독처리마크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경과조치) 제21조 제3항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수입된 화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고시폐지) 식검고시 제2006-8호(2006. 8. 30.) 『수출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과 식검고시 제2006-14호(2006. 12. 7.) 『수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

1.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는 다음 각목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가. 열처리(Heat Treatment)

○ 열처리하는 목재 중심부를 포함한 전 측면의 온도가 최저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 고열건조(KD), 화학적방부제 가압침지, 마이크로파처리 등의 처리방법이 열처리와 같은 소독효과를 충족시킬 있는 경우 열처리로 간주될 수 있다.

나. 메틸브로마이드 훈증(Methyl bromide(MB) Fumigation)

처리온도	약량 (g/m ³)	최저농도(g/m ³)			
		2시간	4시간	12시간	24시간
21℃이상	48	36	31	28	24
16℃이상	56	42	36	32	28
10℃이상	64	48	42	36	32

- ※ 최저온도가 10℃미만에서는 투약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훈증처리 기간은 최소 24시간이 되어야 한다.
- ※ 농도측정은 최소한 투약 후 2, 4, 24시간에 측정하여야 한다.
- ※ MB훈증 시 주의 사항
 - 1). 훈증약제의 신속한 확산 및 균일화를 위해 송풍 팬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피훈증물이 훈증시설 내 용적의 8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
 - 3). 훈증시설은 가스가 방출되지 않도록 완전 밀폐되어야 한다.
 - 4). 훈증시설 바닥이 가스 누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스성 시트 등을 깔아 훈증제가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 5). 목재포장재의 단면이 200mm를 초과하는 경우 소독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재 더미는 가능한한 200mm 두께로 각각 분리하여 가스가 적절하게 침투되도록 한다. 다만, 수출포장재에 대하여 수입국의 요구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그 조건을 우선 따라야 한다.
 - 6). MB 투약량 결정은 가스 혼합물 등을 고려, 그에 대한 보충이 이루어져야 한다.(예, MB에 경고가스 클로로피크린 2%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족한 2% 추가 투약)
 - 7). 가장 두꺼운 목재포장재 심부 온도를 적용하여 투약량을 결정한다.
 - 8). 목재포장재와 관련 있는 모든 상품이 훈증소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9). 목재포장재는 가스가 통과될 수 없는 재료로 감싸거나 덮어서는 아니 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국이 수입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별도의 소독처리기준을 두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소독 처리하여야 한다.

3.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에서 살아 있는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도록 다른 포장재와 피복, 격리, 구분 관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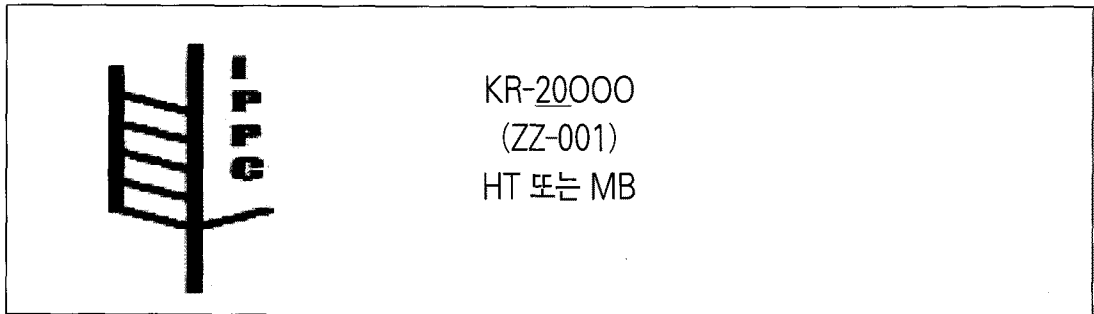
4.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 소독처리업자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작업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 수입화물목재포장재는 훈증에 앞서 수피가 제거되어야 한다(수피가 붙은 당해 포장재만 폐기 가능함)

소독처리마크와 마크표지 방법

1. 아래의 마크는 목재포장재가 소독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임



※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에 사용할 소독처리마크의 크기는 전체 가로 7.5cm × 세로 3.5cm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크기를 조정하여 제작할 수 있음

※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는 국제기준이나 수출국의 소독처리마크표시 등 관련규정에 따름

2. 위 마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symbol(로고) : IPPC에서 승인한 심볼(ISPM No 15, 부속서2)

- 다른 구성요소의 왼편에 표시되어야 한다.

2) KR(국가코드) : ISO의 2자리 국가코드(Korea ⇒ KR)

- 국가코드는 연결부호로 생산자 코드와 구분되어야 한다.

3) 20000(생산자코드) : 적절한 목재사용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독처리 업체에 검역원이 부여한 고유번호(등록번호 : 신고번호)

※ 생산자 코드의 "20"은 마크사용등록증을 발급한 검역원 기관번호(중부지원)이고, 000은 등록(증)번호 또는 신고(증) 번호임

※ 각 관할 기관별 코드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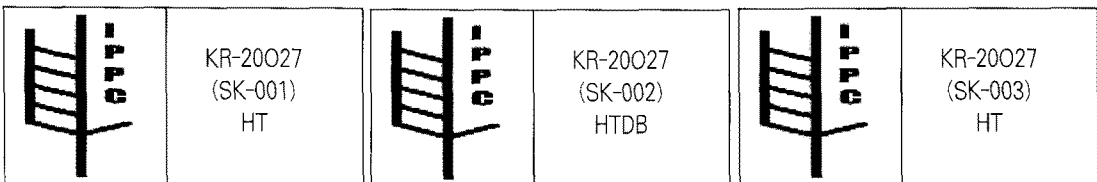
인천공항지원(10), 국제우편사무소(12), 김포공항사무소(14), 속초사무소(25), 중부지원(20), 서울사무소(11), 안양사무소(21), 평택사무소(24), 청주사무소(22), 천안사무소(23), 영남지원(30), 자성대사무소(31), 신선대사무소(32), 대구사무소(33), 울산사무소(34), 김해공항사무소(35), 마산사무소(36), 사상사무소(37), 구미사무소(38), 양산사무소(39), 호남지원(40), 광주사무소(41), 무안공항사무소(42), 광양사무소(43), 제주지원(50), 제주공항사무소(51)

4) (ZZ-001) : 업체의 고유부호 및 마크 일련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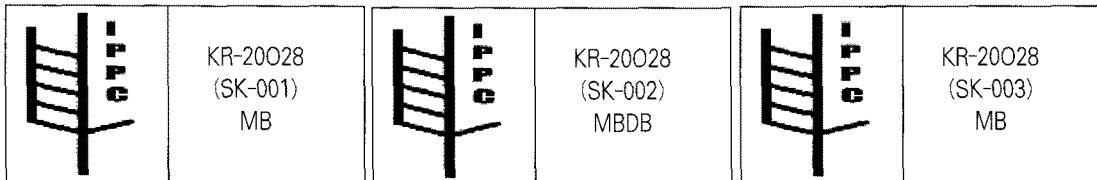
- 업체 고유부호 및 마크 일련번호는 자체적으로 정하여 마크사용등록 시 제출
- 업체 고유부호는 로마자 2자리로 표시하고, 마크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3자리 표시하되 괄호 내에 표시

(예) : 열처리업체인 선경목재 또는 방제업체인 선경방역의 업체 등록번호가 "027" 이고 업체 고유부호가 "SK" 인 마크 3개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 제작함

(열처리업체) : 선경목재



(방제업체) : 선경방역



* 주의사항 : 생산자 코드번호는 5자리 수이며, 기관번호, 등록(신고)번호 순으로 기재

5) 마크 재질은 인두형(반영구) 또는 고무인으로 제작

6) 톱밥, 대패밥 등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부적합한 수입목재포장재는 마크표지를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독사실이 부기된 식물위생증명서 제출)

3. 소독처리마크 사용방법

- 1) 소독처리마크 테두리 내에는 다른 정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 2) 소독처리마크 표지는 해독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위치가 고정되어야 하고, 증명대상 물품의 2개면 이상, 서로의 반대면 위치에 표시하여야 함
- 3) 손으로 그려서는 아니 됨
- 4) 표지 색상은 검정색, 남색, 청색 등을 사용하되, 빨간색, 오렌지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됨
- 5) 표지는 지워지지 않는 스탬프, 소인 등으로 표시
- 6) 소독처리마크를 사용하기 전에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 소재지 관할 식물검역기관에 제출, 소독처리마크 사용등록증을 받은 후 사용



- 7)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목재포장재인 경우
 - 가공목재와 비가공목재가 혼합, 구성된 목재포장재는 소독처리된 비가공목재의 잘 보이는 부위에 소독처리마크 표시
- 8) 짐갈개 등의 목재포장재의 경우 소독처리마크를 잘 읽을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함
 - 선적업자 등은 상품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짐갈개에 대하여 소독처리마크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함

목재포장재 열처리(훈증) 시 주의사항

1. 열처리 시설, 장비 등

- 열처리 시설이 열처리시설 요건에 적합해야 함.
 - 열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변동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관할 구역 검역원에 통보한다. 이 경우 파손 등으로 열처리업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열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온도센서는 목재중심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열처리 시설 내 가장 저온을 나타내는 부위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 측정된 목재중심부 온도는 자동으로 기록되고, 기록된 내용이 출력이 가능하며, 기록지의 표시 방법(처리 일자 및 시간, 온도, 눈금 등)이 적절하여 판독이 가능해야 한다.
 - 온도측정장치(온도센서 포함)는 주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국가교정기관 인정제도 운영세칙 통합고시』의 교정주기에 따른다(1년).

2. 목재포장재 열처리

- 열처리 시설 내에서 가장 저온을 나타내는 부위(지면에서 10~20cm 지점 등)에 있는 목재포장재 중 두께가 가장 두꺼운 목재의 중심 부위까지 구멍을 뚫어 온도계를 삽입한 후 구멍 입구를 실리콘 등으로 밀봉하여 처리해야 한다.
 - 목재포장재의 균일한 열처리를 위해서는 열처리시설 내 온도가 균일하도록 송풍기(순환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 열처리대상 목재는 두께 20cm 이상의 받침목을 깔고 그 위에 적재하여 구석, 구석까지 고르게 열이 전달되도록 한다.
 - 적재 시 틈이 없는 각재, 판재와 같은 목재는 각각의 목재 사이에 간목(사이목)을 넣어 열이 고르게 전달되도록 한다.
 - 열처리는 목재중심부의 온도가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처리한다.
 - 열처리 후 잠열을 이용한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열풍기 가동을 멈춘 다음 일정시간이 지난 후

에 열처리 실을 개방한다.

3. 소독 처리된 목재포장재의 관리

○ 소독처리마크는 열처리 또는 훈증소독 후 해당 장소에서 소독처리업자가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원자재 또는 반제품은 소독처리 의뢰자 또는 구매자가 소독처리업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목재포장재 제작계획 및 소독처리마크 사후표지 요청서를 제출하면 소독처리업자는 요청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목재포장재 제작 및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시 할 수 있다.

- 수출화물 목재포장재를 컨테이너 적재 후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을 하고자 하는 방제업자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으로 승인 요청하여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승인을 받은 후 컨테이너훈증 전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의 보관 및 관리

-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소독처리되지 아니한 목재류와 구분·격리 보관하여야 하며, 옥외 보관 시에는 흙에 접촉되지 않도록 깔판을 깔고 피복하여 보관한다.

4. 목재포장재 열처리 등 내역 기록관리

○ 목재포장재 매 소독건별로 다음 자료를 작성하여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소독작업결과서(목재중심부 온도자동기록표 포함)
-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목재포장재열처리(훈증)작업일지
- 별지 제6호서식의 목재포장재소독처리관리대장
- 별지 제17호서식의 목재포장재 제작계획 및 소독처리마크 사후표지 요청서

5. 기타 사항

○ 소독처리한 목재포장재를 수출업체 또는 포장재 제작업체 등에 공급한 경우에는 수출 전까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 소독처리한 목재포장재가 수출 전 병해충에 감염된 경우에는 재 소독처리를 하여야 한다.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사방법

1. 검사계획 수립

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기관특성을 감안, 검사계획(연간, 월별 또는 분기별 등)을 수립한다.



나. 검사장소 선정

○ 관할지역의 보세구역 중 수입화물 특성, 업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검사장소를 선정한다.

다. 검사인력 운영

○ 지원 또는 사무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식물 현장검사 인력을 활용하는 등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검사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검사장소나 소독처리마크 미표지 화물의 적발이 많은 검사장소는 식물방역관이 수입식물의 검사와 함께 수입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사를 병행한다.

2. 검사 사전통보

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계획에 의한 검사의 경우 검사 1일 전까지 창고 관리인, 컨테이너야 적장 관리인·컨테이너 수화인 등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사계획서(이하 "검사계획서"라 한다)를 FAX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통보 후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 서식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사계획 통지대장에 기록·관리한다.

다. 식물방역관은 검사 전에 검사장소 관리인 등으로부터 입고된 화물에 대한 세부자료(재고화물 목록표 등)를 입수 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3. 보세창고 등 입고화물의 포장재검사

가. 검사대상

(1) 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미 통관화물 중 건수 50% 이상 검사한다.

○ 식물방역관은 사전에 창고관리인 등으로부터 입수한 입고화물 목록을 통해 검사대상 화물을 선정

○ 검사대상 화물에 사용된 포장재가 목재가 아닌 경우에도 검사실적에 포함시킴

○ 이미 통관된 화물이라도 창고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에 포함시킴

(2) 대형 수입 유통센터 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포장재

나. 검사항목

○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표시여부, 소독처리기준 위반여부, 수피제거 여부, 생충 발견여부 등

다. 검사방법

(1) 식물방역관은 보세창고 관리인 등으로부터 입고화물목록표를 제출받아 목재포장재 사용된 화물을 우선 선정,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포장재 검사를 실시한다.

(2) 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목재포장재는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료를 채취한 후 실험실에서 생충 검출 여부를 검사한다. 이 경우 실험실정밀검사 요청은 '식물검역정보시스템'의 '수입식물검사신청서' 서식에 기록하여 출력한 문서를 이용한다.

(3) 실험실 분류 동정 의뢰 결과에 따라 수입식물검사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라. 검사결과 기록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목재포장재 검사대장에 기록하고, 보세창고 등의 관리인이 제출한 재고화물 목록표를 같이 보관한다.

(1) "적합" · "목재포장재 미사용"의 경우 전체 건수만 검사대장에 기록한다.

(2) 목재포장재가 수입요건에 부적합하여 소독 또는 폐기 · 반송명령 되는 건에 대해서는 건수별로 목재포장재 검사대장에 기록한다.

4. 컨테이너에 입고된 화물의 포장재검사

가. 검사대상

(1) 식물방역관은 사전에 컨테이너야적장 관리인 등으로부터 입수한 재고화물 목록표를 통해 검사대상 컨테이너를 선정한다.

(2) 소나무재선충 분포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화물, 소독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주 수입되는 국가의 화물 등에 대해 중점 검사한다.

나. 검사항목

○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표시여부, 수피제거 여부, 생충 발견여부

다. 검사방법

(1) 식물방역관은 컨테이너 개장 전에 화물의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컨테이너야적장 운영자 등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사계획서로 검사사실을 통보하여 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개장 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컨테이너 문을 개장토록 하여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마크 표시 여부 등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화물을 적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3) 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목재포장재는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료를 채취한 후 실험실에서 생충검출 여부를 검사한다. 이 경우 실험실정밀검사 요청은 '식물검역정보시스템'의 '수입식물검사신청서' 서식에 기록하여 출력한 문서를 이용한다.

(4) 검사 후에는 식물검역 봉인(Seal)을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식물검역봉인사용대장에 사용내역을 기록 · 관리한다.

라. 검사결과 기록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목재포장재 검사대장에 기록하고, 보세창고 등의 관리인이 제출한 재고화물 목록표는 검사대장과 같이 보관한다.



- (1) “적합”·“목재포장재 미사용”의 경우 전체 건수만 검사대장에 기록한다.
- (2) 목재포장재가 수입요건에 부적합하여 소독 또는 폐기·반송명령 되는 건에 대해서는 건수별로 목재포장재 검사대장에 기록한다.

목재포장재 검사결과에 따른 처분방법

1.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은 목재포장재는 별도의 합격증명서 발행 없이 검사 종결한다.
 - 금지병해충을 제외한 생충이 발견된 목재포장재는 소독조치한다.
 - 목재두께 200mm 이상 등 소독처리기준에 위반된 목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장재만 소독 또는 폐기할 수 있다.

2.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가 없는 경우
 - 화물 건수별(B/L)로 폐기·반송명령서를 발급하고, 명령서 발급번호는 목재포장재 검사에만 별도로 적용한다.
 - 다만, 일부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목재포장재만 분리하여 폐기·반송 명령할 수 있다.

3. 수입식물에 사용된 목재포장재 처리방법
 - (1)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가 없는 경우
 - 목재포장재는 폐기·반송명령서를 발급하고 수입식물은 검사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 목재포장재에서 생충 또는 수입식물에서 소독대상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소독 후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
 - (2)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가 있는 경우
 - 당해 목재포장재에서 살아 있는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 식물과 목재포장재를 함께 소독조치 하되,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이 당해 식물의 소독처리 기준 보다 높아 식물에 미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목재포장재와 식물을 분리하여 각각의 소독처리기준으로 소독하거나 식물의 소독처리기준으로 소독 한 후 목재포장재만 따로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기준으로 다시 소독한다.
 - 수입식물과 목재포장재에서 각각 다른 병해충이 검출되어 소독이 이루어진 경우 목재포장재 기주 병해충을 우선 적용하여 소독한다. 다만,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식물의 소독방법을 적용, 소독 후 폐기 또는 반송한다.

(3)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가 있으나 해당 목재포장재에서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식물과 목재포장재를 함께 폐기·반송 조치한다.

4. 수피가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재포장재는 소독처리마크 표시와 관계없이 폐기 조치하여야 한다.

5. 기타 적용 예

(1) 캐나다·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재목일 경우 제재목 운반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에 원장이 인정하는 KD 처리마크가 표시되었을 경우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제재목과 함께 결합되어 이동을 같이 하는 목재포장재(사이목, 받침목, 파렛트 등)는 제재목과 함께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 다만, 소독처리마크가 없고 수입금지수종으로 제작된 경우에는 당해 목재포장재는 폐기·반송 처분하며, 제재목 또는 포장재에서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우선 소독조치 후 폐기하게 된다.

(3) 톱밥, 대패밥 등과 같이 마크가 표시하기 곤란한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없는 경우 해당 포장재만 폐기할 수 있다. ㄹ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